



등록번호	출산보육과-21037
등록일자	2025. 12. 15.
결재일자	2025. 12. 15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출산정책팀장	출산보육과장	여성가족국장
옥주화	이정민	석정순	박설연
협조자	2025. 12. 15.		



2026년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

요 약

- **사업목적** : 주거비 부담완화로 결혼·출산 친화 환경 조성
- **지원근거** :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- **사업개요**
 -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 ○ 규모 : 연간 1,500세대
 - 사업대상 : 부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예정 3개월 ~ 혼인 7년 이내)
부부합산소득 연간 1억 3천만 원^{이하}
 - 대상주택 : 부산시 소재 전세보증금 4억원^{이하}의 주택(아파트 포함)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 - 지원내용 : 전세자금 최대 2억 원 대출 및 대출이자 최대 2.0% 지원
 -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대 10년(임신·출산·난임 요건 충족시 연장)
- **소요예산** : 56억원(양성평등·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 출산지원계정)



부 산 광 역 시
(출 산 보 육 과)

2026년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

신혼부부 주택용자(전세자금)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결혼·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I 추진근거 및 목적

□ 추진근거

- 「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2조(기금의 용도)
- 부산광역시-부산은행-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

□ 추진목적

- 신혼부부 전세자금 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
- 결혼 초기 안정적 주거 지원으로 결혼·출산 친화 환경 조성

I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
- 사업기간 : 2026. 1 ~ 12월
- 사업규모 : 신규 1,500세대 및 기 지원자^{‘20~‘25참여자}
- 사업대상 : 부산 거주^{혼인예정 3개월 ~ 혼인신고 기준일 7년 이내} 무주택 부부
부부합산소득 연간 1억 3천만 원^{이하}
- 대상주택 : 부산시 소재 전세보증금 4억 원^{이하}의 주택^{아파트 포함}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지원내용 : 전세자금 최대 2억 원 대출 및 연 최대 2.0% 이자 지원
-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대 10년^(자녀 임신·출산 시 1명당, 난임치료 1년이상 1회 ▶ 2년 연장)

Ⅲ 2025년 추진실적 및 평가

▷ '25. 3분기 기준

□ 총 괄

○ 누적 7,145세대(신규 5,967세대, 연장 1,178세대)^{'20. 5 ~ '25.3분기}

□ 2025 추진실적

○ 연도별 지원 내역

(단위: '25.9월말 기준, 세대, %)

구 분	합 계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.9월
신 규 선 정	5,967	691	1,123	1,600	871	730	952
대 출 실 행	4,332	597	1,106	1,022	451	485	671
연 장 세 대	1,178	-		190	338	452	198

○ 금리 지원 내역

(단위: %)

구 분	'20. 5. ~ 12.	'21. 1. ~ 9.	'21.10.~'22.6.	'22. 7. ~ 12.	'23. 1. ~ 9.	'23.10. ~
대 출 금 리	2.7	2.7	1.5	2.0	4.0	3.5
사 업 참 여 자 부 담 금 리	0.3~0.8	0.3~0.8	0	0	2.0	1.5

○ 연장(임신·출산·난임치료) 세대 현황

(단위: '25.9월말 기준, 세대)

합계	연장 없음 (2년 이내)	연장 세대			
		소계	1회 (4년 이내)	2회 (6년 이내)	3회 (8년 이내)
4,332 (100%)	3,154 (72.8%)	1,178 (27.2%)	1,061 (24.5%)	109 (2.5%)	8 (0.2%)
		100%	90.0%	9.3%	0.7%

※ ('25.9월말) 연장 154세대 = 자녀출산111(72.1%) + 임신39 (25.3%) + 난임치료 4 (2.6%)

※ 총 198세대 중 연장 44세대는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 등 예외조항 해당

○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'25.9월말 기준, 원)

구분	예산액	집행액	집행잔액
금액	7,000,000,000	3,995,909,760(57.1%)	3,004,090,240(42.9%)

□ 2025 주요성과

○ 총평

'25년 3분기 기준 신규자 선정 952세대, 연장 198세대로 총 1,150세대를 선발하여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·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

- '25년에는 신규 진입 확대* 및 부자격자** 사전예방으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으로 신규 참여자 상승 (30.4%) 효과 ▷ '24년말 730→'25년 3분기말 952세대 신청, 증 222세대

※ 4분기 기준 1,297세대 선정 예정

* (신규 진입 확대) ①사업 조기 시행 ②신청기간 연장(2일 → 약 2주)

** (부자격자 사전예방) ③임대차계약서 체결기한 조정(신청 지참서류 준비기간 연장)
▶ (기존) 신청시작일한 → (변경) 신청종료일 전일한

구 분	'24. 1분기	'25. 1분기
신청기간	2일('24. 1. 11. ~ 1. 12.)	약2주('24. 12. 26. ~ '25. 1. 10.)
임대차계약서 체결 ^{기한}	신청시작일('24. 1. 11.)기준	신청종료일 전일('25. 1. 9.) 기준

IV 2026년 추진계획

1 신규 대상자

□ 자격요건

○ 사업대상

- 부산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(예비)부부
- (예비)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
- 모집 세대 : 1,500세대*(1분기⁴⁰⁰, 2분기⁴⁰⁰, 3분기⁴⁰⁰, 4분기³⁰⁰)

* 모집세대 중 분기사업 미달인 경우 추가 모집 및 분기별 모집인원 조정 가능

○ 제외대상자 :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(배우자 포함)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

※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(머물자리론, 월세지원 등)과 중복수혜 불가

○ 대상주택 : 부산 소재 임대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(아파트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
※ 제외주택 : 공공임대주택,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, 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

□ 대출요건

- 대출신청 시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침에 따름
 - (신규임차)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 - (계약갱신)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대출한도 : 최대 2억 원 이내(전세보증금의 90%이내)
 - ※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
- 대출금 보증방식 :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(대출금 100% 보증)
 - ※ 보증신청에 따른 보증료(대출금의 0.02%)은 신청인 부담
- 대출금리 : 연 3.5% ▶ 소득별 차등금리 적용
 - (부부합산 연소득) 1억원^{이하} ▶ 시 2.0%, 자부담 1.5%
 - (부부합산 연소득) 1억원^{초과} ▶ 시 1.8%, 자부담 1.7%
-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대 10년
- 대출상환 : 대출만기 원금 일시 상환

□ 사업신청

- 신청방법 : 부산은행 모바일 banking 앱
- 신청기간 : 분기별(1/4/7/10월) 접수 · 실행
- 신청관리 : 부산은행

□ 사업선정

- 선정방법 : 부산은행에서 통보받은 신청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*
 - * 분기별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 실시(추첨 프로그램 사용, 별도 계획 수립)
- 선정일정 : 분기별 신청 일정에 따라 추첨 진행
- 선정주관 : 부산시
- 선정발표 : 사업대상자 공고 및 협약기관에 사업대상자 알림 공문 발송

□ 실적관리

- 월별실적 : 매월초 전월 실적 확인
- 분기실적 : 분기 종료 후 대출건수, 대출금액, 현안사항 등 파악,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다음분기 계획 수립 시 반영

□ 이자지원 중단사유(배우자 포함)

대출기간 중	연장심사 시
①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내 대출 대상주택에 미전입한 경우 ② (결혼예정자가구)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사실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임차보증금 4억원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을 이용중인 경우 ④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(부부합산 기준) ⑤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부산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주거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 ⑦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보유한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	① 부산시 외 지역으로 한번이라도 전출한 경우 ②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주거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

□ 이차보전금 지급

○ 지급절차^{세부 업무협약서에 따름}

- 분기별 이차보전금 청구(다음분기 첫째달 15일/4분기는 12월 20일까지)
- 이차보전금 지급(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)

② 연장 대상자

□ 지원근거

○ 「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2호

□ 자격개요

- 지원대상 : 기 지원자 중 연장 시기 도래자 ※ 485세대(‘24년 대출실행 세대 등)
- 지원요건
 - 지원기간 내 자녀를 임신·출산한 가정
 -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 1년 이상 받은 가정
-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대 10년(총 4회 연장가능)

□ 요건별 세부기준

○ 자녀임신^{'24. 2분기 시행}

- 지원 기간 내 임신한 경우 태아 1인당 2년씩 연장
- 임신으로 연장한 경우, 출산 이후 동일 자녀로 중복 연장 불가

○ 자녀출산

- 지원 기간 내 출생 신고된 자녀 1인당 2년씩 연장
-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, 대출 목적물에 전입하여 거주

○ 난임치료 시술

- 지원기간 내 모자보건법 제11조3,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1년 이상 시술*을 받고
 - *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
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료기간 명시 진료확인서 제출 시 1회(2년) 연장
- 난임치료 시술의 경우 지원기간 중 총 1회만 인정

□ 대출요건

- 신청시기 : 대출 종료 1개월 전
- 대상주택 :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(아파트포함)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대출한도 : 최초 본인이 대출한 금액(증액불가)
- 대출금리 : 최초 적용 금리

□ 자격검증

- 대출연장시점에 사업참여자의 자격유지사실을 검증하여, 적격자가 연장요건 충족시 연장 가능하며 부적격 확인시 대출 연장 불가

V 소요예산

- 소요예산 : 56억원(시비 100%)
- 예산과목 : 출산 지원, 출산 지원 강화,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, 일반 보전금, 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 지방재원)

VI 향후계획

- 연장 대상자 자격 완화*방안 검토('26년 1월) 및 조례 개정 추진
*난임치료 시술기한 삭제 검토(기존 1년이상 받은 경우)
- 사업 지원내용(전세 또는 월세) 비교 분석·검토

VII 홍보계획

- 기관(부서)별 홍보 협조사항

부서(기관)명	협 조 사 항
공보담당관	○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사 홍보
뉴미디어담당관	○ 부산시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 홍보
청년희망정책과	○ 부산청년플랫폼(부산시 홈페이지 내) 게재
구군	○ 각종 소식지, 구·군 홈페이지 등 홍보

- 한국주택금융공사, 부산은행 자체 홍보

VIII 행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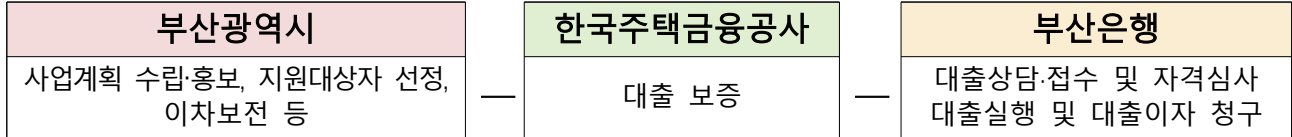
- 1분기 사업 공고(시홈페이지) : '25. 12. 15.
- 대출접수(부산은행) : '25. 12. 26. ~ '26. 1. 9.
- 대출선정(부 산 시) : '26. 1. 13.
- 대출실행(부산은행) : '25. 1. 29. ~ 3. 31.

붙임 2026년도 1분기 공고문 1부. 끝.

참고1

사업추진 체계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① 신규신청

단 계	주요내용	비고
① 사업계획 수립, 공고 (시)	▶ 연간 계획수립 ▶ 분기별 사업공고(접수일, 대출실행일 등)	
↓		
② 사 업 신 청 (신청자)	▶ 부산은행 모바일 앱 신청	소요일수 약 2주간
↓		
③ 신청접수 및 통보 (은행 → 시)	▶ 신청자 접수, 접수결과 시로 통보	소요일수 1일
↓		
④ 대상자 선정 (시)	▶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	소요일수 1일
↓		
⑤ 대 출 신 청 (지원대상자→은행)	▶ 필요서류 구비하여 신청	
↓		
⑥ 대 출 심 사 (은행)	▶ 자격심사 - 시 거주, 혼인기간(7년이내) -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이하 - 대출실행 주택 적정 여부(대출보증금 4억원이하 등)	소요일수 14일
↓		
⑦ 보증한도액 산정 (한국주택금융공사)	▶ 연소득, 신용상태에 따른 보증한도액 산정	보증서발급 비용은 신청자 본인부담
↓		
⑧ 대 출 실 행 (은행)	▶ 보증한도액 내에서 대출실행	
↓		
⑨ 이차보전 청구 (은행 → 시)	▶ 분기별 대출이자 청구 - 대출금액, 이자 일할 계산	
↓		
⑩ 이자지원 (시 → 은행)	▶ 적격자 이자지원 ▶ 부적격자 대출이자 미지원 및 환수 조치	

2 연장신청

단 계	주요내용	비고
① 연장지원 계획 수립·공고 (시)	▶ 지원 대상, 요건 신청시기 등	
↓		
② 대 출 신 청 (지원대상자→은행)	▶ 대출 종료 1개월 전 필요서류 구비하여 신청	
↓		
③ 대 출 심 사 (은행)	▶ 자격심사 - 지원기간 내 임신, 출산 또는 난임치료 1년이상 받은 경우 · 임신·출산 : 임신확인서, 기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· 난임 : 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 - 대출실행 주택 적정 여부(대출보증금 4억원이하 등)	소요일수 10일
↓		
④ 보증한도액 산정 (한국주택금융공사)	▶ 연소득, 신용상태에 따른 보증한도액 산정	보증서발급 비용은 신청자 본인부담
↓		
⑤ 대 출 실 행 (은행)	▶ 보증한도액 내에서 대출실행 (최초 본인이 대출한 금액 이내로 증액 불가) ▶ 대출금리 : 최초 적용 금리	약2달간
↓		
⑥ 이차보전 청구 (은행 → 시)	▶ 분기별 대출이자 청구 - 대출금액, 이자 일할계산	
↓		
⑦ 이자지원 (시 → 은행)	▶ 부산은행 청구에 따른 이자 지원	

사전검토 체크리스트

□ 양성평등

분야	검토 및 고려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고
통계	☞ 성별분리통계를 생산·제시하였습니까? (양성평등기본조례 제22조) ■ 사업기초자료, 사업대상자, 수혜자, 사업성과, 결과보고 등 ■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, 국가통계포털 등 활용	☐	☒	
사업참여자	☞ 성별, 연령, 생활형태를 고려하여 기획·모집하였습니까? ■ 비혼, 1인가구, 한부모, 다문화 등 다양한 생활 형태 고려 ■ 행사, 포럼, 컨퍼런스의 진행자, 발표자, 토론자 등 성별균형 고려 ■ 홍보, 모임시간·방법 등 다각화	☐	☒	
위원회	☞ 성별 균형 위촉하였습니까? (양성평등기본조례 제25조) ■ 위촉직 위원 구성 시, 특정 성별 60% 이하 구성	☐	☒	
건축 공간설계	☞ 성인지 공간 구성을 하였습니까? ■ 유아, 노인, 장애인, 임산부, 유아차 등의 접근성, 안전성, 편의성 등 검토	☐	☒	
프로그램	☞ 양성평등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까? ■ 성인지감수성 교육,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■ 참여자의 성별 통계생산, 성별 만족도 조사 ■ 교육 과정 개발 시, 성별에 따른 교육 요구도 반영	☐	☒	
홍보	☞ 홍보물 제작 시, 성차별적 요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까? ■ 홍보물 기획 및 활용시 성별고정관념 및 성차별 표현 점검 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시, 전문가 사전검토 가능	☒	☐	
용어	☞ 공문서 상에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? ■ 저출산 → 저출생, 유모차 → 유아차, 부녀자 → 여성, 자매결연 → 상호결연, 수유실 → 아기쉼터, 맘카페 → 육아카페 등	☒	☐	

□ 정책소통

분야	검토 및 고려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고
수요자 분 석	☞ 정책수요대상(주요 타겟) 검토 ■ (연령·성별)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여성, 노인, 전체 ■ (분야) 전문가, 장애인, 취약계층, 다문화, 경제인, 기타	☒	☐	
의견수렴	■ 전문가 자문 (위원회, 협의회, 전문기관, TF 등) ■ 시민 의견 수렴 (공청회, 설문조사, 토론회, 공모 등)	☐	☒	
홍보협조	☞ 홍보부서와 홍보방안 사전 협의 ■ 홍보컨설팅, 홍보전략회의 등 홍보기획 방안 등 협의	☐	☒	
홍보방안	☞ 정책(사업) 홍보방안 검토 ■ 보도자료, 브리핑, 설명회, 영상제작, 홍보물 제작·배부 등	☒	☐	
탄소중립 사전평가	☞ 정책사업 탄소중립 지표 검토 및 언론홍보 ■ (정량)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가능 사업 ■ (정성)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은 불가하나, 감축활동 기여 사업 ■ (적응) 기후변화 영향 완화, 재해·재난 등에 대응하는 사업 ☞ 온실가스 감축량 000 tCO ₂ eq./년 (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원단위 참고)	☐	☒	